

제4강 보세제도

Welcome to
Korea Customs service



<주요 강의내용>

1. 보세의 개념과 보세구역
2. 지정보세구역
3. 특허보세구역(1)
4. 특허보세구역(2)
5. 종합보세구역과 유사보세구역
6. 보세운송의 개요
7. 보세운송의 목적지
8. 보세운송 신고와 승인
9. 보세운송 절차

1. 보세의 개념과 보세구역

- 보세(BOND)란 국내에 있는 외국물품에 대해 과세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
 - 보세구역제도
 - 보세운송제도

- 보세구역
 - 지정보세구역 : 지정장치장, 세관검사장
 - 특허보세구역 : 보세창고, 보세공장, 보세전시장, 보세건설장, 보세판매장
 - 종합보세구역
- 유사보세구역 : 보세구역외장치장, 자유무역지역

2. 지정보세구역

- 지정보세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, 건물, 기타의 시설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설정
- 지정장치장 :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장소
 - 대개 항만의 부두, 공항, 세관청사 내에 위치
- 세관검사장 :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는 장소. 공항 입국장의 CIQ가 대표적

3. 특허보세구역(1)

- **보세창고** : 외국물품 또는 수출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. 보세구역의 대부분을 차지
 - 무역실무에서는 CY, CFS, 선사 장치장, 야적장 등으로 불림
 - 자가용 보세창고와 영업용 보세창고로 구분

- **보세공장** : 외국물품이나,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
 - 용도에 따른 구분 : 수출용보세공장, 내수용 보세공장, 겸용보세공장
 - 보세창고 반입물품은 사용신고후 보세작업 실시
 - 보세작업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**제품과세** 또는 **원료과세** 방법에 의해 과세처리

4. 특허보세구역(2)

- **보세전시장** : 박람회, 전시회 등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
- **보세건설장** : 외국물품인 기계류, 설비품 또는 공사용장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산업시설의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장소
- **보세판매장** :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. 공항 출국장의 면세점이 대표적

5. 종합보세구역과 유사보세구역

- **종합보세구역** : 보세창고, 보세공장, 보세전시장, 보세건설장, 보세판매장의 기능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장소. 관세청장이 지정

- **유사보세구역**
 - **보세구역외장치장** :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크기나 무게의 과대,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을 임시로 장치하는 곳
 - **자유무역지역** :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유로운 제조, 물류, 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.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

6. 보세운송의 개요

- 보세운송은 입항지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는 불필요
 -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외국물품이지만 보세운송은 필요하지 않음 :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내 적재의무만 부여

- 내륙지에서 통관할 때의 장점
 - 수입자의 편리성
 - 수입통관 시기의 조절
 - 물류비용의 절감 문제

7. 보세운송의 목적지

개 항

보세구역

통 관 역

세관관서

통관우체국

통 관 장

보세구역외 장치장

자유무역지역

8. 보세운송 신고와 승인

- 보세운송신고 :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한 다음 보세운송이 가능
-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는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
 1. 보세 운송된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다시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
 2. 검역을 요하는 물품
 3. 위험물, 비금속설, 귀금속, 의약품, 한약재 등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
 4.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
 5.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
 6.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
 7. 적하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 하는 경우의 그 물품

9. 보세운송절차

- 보세운송신고인 : 화주, 관세사, 보세운송업자
- 보세운송통로 : 세관장이 운송목적지까지의 최단 구간을 선정하여 지정(예 : 경부고속도로)
- 보세운송 기간 : 해상화물은 15일, 항공화물은 7일을 원칙으로 지정
 - 필요시 연장 가능
 - 연장승인 없이 기간내 도착하지 않을 때는 관세등을 추징